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7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팀원 이보근 [6587]/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07935호

시행일자 2021. 10. 0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과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과
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(제2021-243호)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3호, 2021. 09. 28.)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40호 (2021.9.27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개정사항

- 별표 1 별지1기재 약제 신설
- 별지2 기재 약제 변경
- 시행일 :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.

붙임.

1. 「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」_일부개정고시(제2021-243호) 1부.
2. 「210929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」_별표1_일부개정목록(제2021-243호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